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제정 2017. 12. 4.

전문개정 2019. 10.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HK⁺사업에 2017년부터 선정되는 대학 및 연구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HK⁺’는 ‘인문한국플러스’의 영어 표현인 Humanities Korea plus의 머리글자를 딴 약칭을 말한다.
2. ‘아젠다’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각 연구소 연구계획서의 향후 7년간의 연구주제를 말한다.
3. 연구계획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신청서를 말한다.
4. ‘연구단’은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연합하여 참여한 형태를 말한다.
5. ‘HK⁺연구소(원)’는 HK⁺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소(원)를 말한다.(이하 “HK⁺연구소”라 한다.)

제4조(HK⁺연구소의 유형) ① HK⁺연구소는 HK사업 및 HK⁺사업 미수행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HK⁺ 1유형과 HK사업 완료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HK⁺ 2유형으로 구분한다.

② HK⁺연구소의 연구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인문기초학문 : 기초인문학 분야 인프라 구축 및 우수 학술성과 창출
2. 해외지역 :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및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3. 소외보호 및 창의도전 : 학문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분야(소외보호)
및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분야(창의도전)
4. 국가전략 및 융복합 : 사회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해결방안 제시(국가
전략) 및 타학문과의 통섭적 연구 강조(융복합)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부에서 수립·통보한
연도별 시행계획(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
포함)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연구소가 확정된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선정 연구소에 대한 연차(단계)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와 일정
3. 신규 연구소에 대한 선정 계획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

제6조(규칙의 적용 범위) 2017년부터 HK⁺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 HK⁺연구소 및 참여인력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인문한국플러스관리위원회

제7조(설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문한국플러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인문한국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 경고 처분 등에 대한 사항 심의
2. HK⁺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 평가 · 관리 등에 대한 주요사항 자문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 및 인접 학문분야 전공자 또는 대학행정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기관 직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교육부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문기관의

HK⁺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협의하고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HK⁺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참여 조건) HK⁺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장은 사업 신청 전 교(학)칙에 명시된 설립 근거에 의하여 연구소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 기간)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조에 의한 유형별 선정된 HK⁺연구소에 대하여 HK⁺ 1유형에 선정된 연구소에는 HK교수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HK⁺ 2유형에 선정된 연구소에는 HK교수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최대 7년(3+4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황, 사업추진상황, 연차별, 단계별 평가 및 수시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참여인력 구성) ①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의 참여 인력을 연구소장,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전담 행정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HK⁺사업 선정 후 10개월 이내에 HK교수와 HK연구교수를 합하여 4명 이상을 임용 완료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의 장은 사업 선정 시 전문기관에서 승인한 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 인원대로 HK교수와 HK연구교수를 임용하여야 한다.

④ HK교수 및 HK연구교수를 임용하는 경우 HK교수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HK연

구교수는 특정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HK교수 및 HK연구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연구소에 임용되어 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구소장) ① 대학교의 장은 HK⁺사업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연구소장(연구단의 경우 참여기관 대표도 해당)을 임명하고, 연구소장은 아젠다 설정, 연구소 기반 조성, 인력 육성, 연구소 운영 및 지역인문학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소장이 아닌 경우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HK⁺사업비의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운영비용(본인의 연구활동비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대학교의 장은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단계별 지원기간(3년+4년)동안 소장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악화,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소장은 HK⁺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주도 대형(연간 2억원 이상)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⑥ 연구소장의 교수시간은 매년 9학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일반연구원) ① 연구소장은 HK⁺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HK⁺사업 참여자로 학과소속 전임교원 중 전문기관에 등록된 자를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연구원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휴직중인 교수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다만, HK⁺사업 수행이 가능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부의 연구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및 연구자

② 일반연구원에게는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HK⁺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③ 1단계에서는 선정 당시 연구계획서 상의 일반연구원의 수를 감소할 수 없다. 다만, 2단계 이후 일반연구원의 수 감소는 각 단계 시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연구소장이 일반연구원을 변경할 경우 HK⁺사업 신청 요강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일반연구원의 임기는 단계별 사업기간(3년+4년)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단계별 사업기간 내에 일반연구원이 HK⁺사업 참여를 중단할 경우, 단계별 논문 게재의 의무는 후임 연구자와 공동 책임으로 한다.

⑥ 일반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의 HK⁺사업 수행에 성실히 참여하며, 단계별로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최소한 1편 이상의 아젠다 관련 논문(또는 저역서)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제15조(HK교수) ① HK교수는 최초 임용시점부터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사업 완료 이후에도 그 직위 및 권리가 유지되는 교수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소에

상근하며 HK⁺사업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1. 사립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면서 정년 트랙으로 임용된 자
2. 국공립대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학칙에 의해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무기계약 기금교수 등으로 임용된 자
- ②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 대하여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한 보수, 연구실 제공, 시설이용, 후생복지 및 기타 처우는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의 임면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면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대학교의 장은 이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HK교수 결원 발생 시, 발생 시점 이후 다음 학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HK교수를 충원하여야 한다.
- ⑤ HK교수는 해당 연구소의 HK⁺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단계별로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아젠다 관련 논문을 주저자로서 연 평균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저역서의 경우 단독 저서 및 역서는 논문 3편, 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산정한다. 다만 상기 HK교수 논문게재 편수와 관련된 의무는 임용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⑥ HK교수는 학과나 타 기관업무를 겸직·겸무할 수 없으며 HK⁺사업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단, HK⁺2유형 연구소의 HK교수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겸직·겸무가 가능하다. (신설)
- ⑦ HK⁺2유형 연구소의 HK교수에게는 학술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HK연구교수) ①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를 HK⁺연구소 소속으로 임용하여 연구소에 상근하며, HK⁺사업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전임연구인력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는 기준액(한국연구재단 전임연구인력 최소 인건비 연3,000만원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되, 연구 능력에 따라 보수의 10%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교의 장(또는 연구소장)은 HK연구교수의 임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면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HK연구교수는 해당 연구소의 HK⁺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단계별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아젠다 관련 논문을 주저자로서 연 평균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저역서의 경우 단독 저서 및 역서는 논문 3편, 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산정한다. 다만 상기 HK연구교수 논문게재 편수와 관련된 의무는 임용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연구보조원) ① 대학교의 장(또는 연구소장)은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수료자, 학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 중에서 HK⁺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의 지휘에 따라 연구보조활동 내지 성과확산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지급 받는 보수를 포함하여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보조원이 졸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신청 당시의 신분을 연구 종료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취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전담행정직원) ① 대학교의 장은 교비 등 대학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행정직원을 HK⁺연구소에 1인 이상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전담행정직원은 정식직원이어야 하고 조교, 연구원 및 재학생은 행정직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대학교의 장은 교비 등 대학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지역인문학센터 전담행정직원을 HK⁺연구소에 1인 이상 배치하여 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인문학센터 전담행정직원의 자격은 대학의 자율로 정한다.

③ HK⁺ 2유형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 소속 전담행정직원으로 하여금 지역인문학센터 행정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참여 기관) ① 대학교의 장(또는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과 연구실적이 우수한 중·소규모 연구소를 참여기관으로서 HK⁺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참여 기관은 인문학분야 대학부설연구소와 함께 연구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연구소 간의 역할 및 의무분담내역(예산배분, 인력임용 및 정년보장 계획 포함)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단일 대학부설연구소가 주관이 된다.

③ 주관 대학부설연구소가 소속된 대학교가 인력 임용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④ 참여 기관은 인력, 예산 집행 등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⑤ 주관대학부설연구소와 참여기관이 동일 대학교 소속일 경우 통합계획, 서로 다른 대학교 소속일 경우 통합운영계획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 기관) ① 대학교의 장은 HK⁺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
2. 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체부설연구소, 지자체출연연구소
3. 비정부기구: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4. 언론기관: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과 「방송법」 및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법인
5.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시, 도교육청
6. 기타 기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기타 연구단체 및 기관

② 협력기관은 HK⁺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소 운영) ①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운영의 제도화와 조직 체계의 개선을 위해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소속 연구인력의 관리를 위하여 대학 인사

위원회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HK연구교수의 경우 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대학교의 장은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성과 및 연구소 운영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특성에 맞는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 혹은 전국 규모의 학술지 발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대학교의 장은 유관 기관과의 정기적 협의 및 학술 대회 등의 개최를 통한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지원의 성과가 학문적·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학교의 장은 DB구축, 자료서비스, 시민강좌 등을 통하여 연구 성과의 보급 및 확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확산총괄센터) 전문기관의 장은 HK⁺연구소 간의 성과 공유 및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성과확산총괄센터’를 둘 수 있다.

제23조(지역인문학센터) ① 대학교의 장(또는 연구소장)은 HK⁺연구소가 지자체, 인문도시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인문자산활동과 시·도별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및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인문학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의한 ‘성과확산총괄센터’는 ‘지역인문학센터’의 역할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조정하고, 지역인문학센터 간 연계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HK⁺연구소는 ‘지역인문학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제2항 규정에 의한 ‘성과확산총괄센터’의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대학교의 장, 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및

HK교수, HK연구교수의 임용과 대우

제24조(HK교수 및 HK연구교수 임용) ①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선정 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채용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소속 대학교의 전임 교원 임용 규정 및 채용 절차에 따라 HK교수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학교의 장은 사업 신청 시 대학이 제출한 연도별 임용계획에 따라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전원을 임용 완료하여야 한다. 단, HK⁺2유형 연구소의 경우 HK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용하기로 협약한 HK교수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를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소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대우 규정 제정) 대학교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HK⁺연구소에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 환경 보장) ① 대학교의 장은 연구소 시설 및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게 동일 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 연구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교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에게 1인당 최소 4.95m² 이상의 연구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교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HK교수 정년보장) ①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 대해서 학과의 전임교원과 같은 발전 단계(조교수-부교수-정교수)를 제도화하는 규정 또는 규정 개정 계획과 단계적 정년보장 계획(구체적 예산확보 계획 포함)을 신청 시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HK교수를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라 정년 트랙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보장 확정 전에는 심사 등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대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HK교수 정년보장 직위를 연구소 소속으로 대학교 규정상 확보하여야 하며, 정년보장 심사는 학교 자체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1유형: 6년차 사업기간 완료 시까지 간접비 및 연구소 인센티브, 지역 인문학센터운영비를 제외한 최대 연간 국고지원금 3억원당 1명 이상(1차년도 연구계획서 기준, 소수점 이하 올림수)

2. 2유형: HK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용하기로 협약한 HK교수 수

④ 대학교의 장은 신청 시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임용 및 활용, 정년

보장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립대학교는 이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학교의 장은 기 지급 받은 국고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이 사업기간 내에 대학의 HK교수 정년 보장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취소할 경우 대학교의 장은 기 지급받은 국고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국공립 대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하여 HK교수를 교육공무원(연구소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학교의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중 해당 인건비 재원은 사업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사업 수행주체) ①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HK⁺연구소가 소속된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본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②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HK⁺연구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대학 및 HK⁺연구소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이 규칙 및 사업공고 또는 협약 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④ 대학의 장 및 HK⁺연구소의 장은 규정 및 참여조건을 준수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간의 상시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소가 소속된 대학교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소장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사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4. 학술활동 결과(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술활동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인문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조치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1.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
12. 기타 HK⁺연구소의 유지 조건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제30조(협약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교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소장(참여 연구원 포함) 또는 대학교가 HK교수 임용의무 위반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연구소장 또는 대학교의 장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연구과제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및 HK⁺연구소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5.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학교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대학교의 이의 제기 현황 및 그 처리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협약이 해약된 대학교의 장은 협약해약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된 국고지원금의 반납 및 대학교의 대응 부담금 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자 또는 대학교 및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의한 사업비 정산 시, 연구소 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HK연구교수 퇴직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반납받을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국고지원금을 다른 연구소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2조(전문가 자문)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연구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문단은 각 학문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필요 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자문 결과를 해당 HK⁺연구소의 연차점검, 단계평가 및 총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3조(자체평가) ① 대학교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HK⁺연구소에 대한 대학교 차원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자체평가는 HK⁺연구소 운영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대학교의 장은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의한 연차점검, 단계평가, 총괄평가 보고서 제출 시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소의 사업 수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 및 연구소의 장은 전문기관의 수시점검을 위한 자료 및 현장조사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신설)

제35조(연차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연간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연차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학교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점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담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HK교수(정년트랙) 임용 등 협약사항 이행여부
2.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 실적
4. 지역인문학센터 운영결과
5. 기타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점검을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하위 연구소 지원예산을 10% 범위 내에서 삭감하여 상위 연구소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와 연계, 행정조치(주의, 경고, 협약해약, 사업비 회수 등)를 할 수 있다.

제36조(단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연구소의 3년차 사업기간 종료 전에 단계별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단계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학교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에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계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및 면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HK교수(정년트랙) 임용 등 협약사항 이행여부
2. 사업추진상황 및 단계 내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 실적
4. 지역인문학센터 운영결과
5. 기타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대해서는 연구소 간 평가 결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HK교수 정년트랙 임용의무 위반 및 사업 성과가 계획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경우
2. 평가결과 만점의 70% 미만을 득점한 경우
3. 평가결과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소의 경우, 당해연도의 신규 신청 연구소와 경합하여 다음 단계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지원 중단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사업성과가 우수한 연구소 또는 신규 연구소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와 연계, 행정조치(주의, 경고, 협약해약, 사업비 회수 등)를 할 수 있다. (신설)

제37조(총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연구소의 최종 사업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종연도에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최종 지원 연도 연구개시일 이전에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의 장은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분석·평가하여 연구소별 총괄평가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보고서에는 HK교수의 정년트랙 임용 결과 및 정년보장 완료 결과가 적시되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정년보장이 완료되지 못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향후 정년보장 완료 계획(예산 확보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한다)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38조(주의 및 경고 처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HK⁺연구소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의 2번은 경고 1회로 간주하며, 사업기간 중 동일 사안으로 경고를 3회 받거나 누적 경고가 5회를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HK⁺연구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경우, 대학교의 장은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의 제기) ① 대학교의 장은 수시점검, 연차점검, 단계평가, 총괄평가 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교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40조(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국고지원금
2. 대학교 대응부담금 : 대학발전기금 또는 법인 전입금 등에서 HK⁺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경비(입학금, 수업료는 제외한다)

제41조(사업비 계정관리) ① 대학교의 장은 사업비에 대하여 연구소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응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편성된 대응부담금 및 HK교수 인건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서에 기재된 최초사업개시일자부터 만 1년이 되는 일자까지로 한다.

제42조(사업비집행계획 수립) ① 연구소장은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이전에 당해 사업 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집행계획을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및 「HK⁺사업 기본계획」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전문기관이 요청할 때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소관 전체 HK⁺연구소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대학교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집행계획 제출 시 전문기관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비의 집행) ① 대학교의 장은 모든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 중앙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관리할 수 없다.

② 사업비는 연구시설 이외의 시설비,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HK⁺연구소 또는 중앙관리부서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행위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④ 사업비의 지출은 별도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비의 규모는 당초 직접비의 2% 범위 내로 한다.

⑤ 사업비 집행은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도별 사업비집행계획,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HK⁺사업 기본계획」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이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이 처리규정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학)칙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⑥ HK교수 인건비는 교비회계(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계 포함)를 통해 대학 본부가 직접 집행한다.

제44조(국고지원금)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0조 제1호의 국고지원금을 7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차 및 단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고지원금의 지출항목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및 「HK⁺사업 기본계획」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따른다.

제45조(대응 부담금) ① 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대응부담금을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금액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② 대학교 대응부담금에 대하여는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 대학교의 장은 대응부담금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의 사용용도 이외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적정한 집행항목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교의 장이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해당연도의 대응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국고지원 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제38조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를 부과하거나 제31조에 따라 협약해약을 할 수 있다.

제46조(항목 간 예산 변경) ① 연구소장은 항목 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당초 직접비의 20%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단계 1차년도에 한하여 인건비(HK연구인력 공개채용 기간의 미사용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단계 2~3차년도는 전문기관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7조(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 ① 대학교의 장은 사업비를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 후 잔액을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고지원금은 당해 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HK참여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 1차년도 및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대학교 대응부담금은 당해 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 1차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국고지원금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⑤ 대학교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월액과 이월액 집행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사업비의 회계기간 내 집행 실적 및 이월 정도를 조사하여 제38조에 의한 주의 및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예금 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대학교의 장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HK⁺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기타 기술료 등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 ① 대학교의 장은 국고지원금 및 대학교 대응부담금을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을 총 사업 기간 종료 시

반납한다.

③ 대학교의 장은 소속 연구소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홈페이지 운영 등) ① 연구소장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연구소 현황, 사업진행 상황, 사업(아젠다) 실적,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및 지역인문학센터 성과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역 연구소장은 해당 지역의 기초 및 전문자료 D/B를 구축하고 정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51조(보고 의무) 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장관 및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정보의 공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교 및 연구소의 현황, 연구계획서 및 운영 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제12조, 제13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14조 내지 제18조,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이 미진할 때 및 제34조 내지 제37조의 점검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문한국플러스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주의 또는 경고), 협약해지, 사업비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HK교수 임용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부칙<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인력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용하는 대상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HK교수 임용의무 위반 제재조치 기준(제53조 제2항 관련)

1. 중간평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 연구소가 협약 시 제출한 연도별 HK교수 임용계획을 위반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경고’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처분
 - 1유형

구분	사업비 삭감 기준
인건비기준	■ 해당연구소 HK교수 평균인건비(약 70백만원 내외) × 미임용기간비율*

* 미임용 인원이 복수인 경우 인원별 미임용기간비율에 따른 사업비 삭감 금액 산출 후 합산

- 2유형

구분	사업비 삭감 기준
인건비기준	■ 해당연구소 간접비 총액 × 미임용기간비율*

* 미임용 인원이 복수인 경우 인원별 미임용기간비율에 따른 사업비 삭감 금액 산출 후 합산

* 2유형은 HK교수 결원 발생 후 기한 내 미충원 시 제재하며, 사업비 삭감 기준 별도 적용(제14조 제4항)

- 중간평가를 통해 미임용사항 적발 시 차년도 중간평가 시까지 임용 필수 ⇒ 기한 내 미임용 시 ‘협약해지’ 및 ‘사업비 회수’
 - 단, 단계평가(3년주기)로 미임용사항 적발 시 지원중단

2. 6년차 평가 및 사업 완료 연구소 대상 제재처분 기준

- (처분기준) ①의무확보기준 미달, ②협약인원 미달로 구분

구분	제재처분기준	
	제재처분액 산식	참여제한
의무확보기준 미달	3억원 × 미충족인원 × 사업기간(7년)	참여제한 1년*
협약인원미달	[간접비 지급 총액 × (미충족인원/협약인원)] + [직접비 지급 총액 × (미충족인원/협약인원)] × 결원기간/총기간	

* 대상 대학은 처분일로부터 교육부소관 연구소단위 연구지원사업(이공분야 포함)에 1년간 신청제한

* HK* 2유형 연구소는 협약인원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기준 적용

- (HK교수 정년보장) 사업종료년도 총괄평가 시 HK교수 정년보장 직위여부 판단
 - HK교수의 계약만료시점과 해당 연구소의 사업종료시점이 동일한 경우 총괄평가 시까지 재계약 완료 필수
 - 기한까지 재계약 미완료시 HK교수 미임용으로 간주하여 제재처분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회수 처분